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관리지침

2014. 11. 19. 제정
2015. 5. 20. 개정

(사)한국강구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지침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회의 위상과 기술적 권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기술보급을 위하여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 절차, 방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효과적인 인증업무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공업화박판강구조”란 웨브가 세장판요소로 구성된 강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웨브가 변단면으로 구성되거나, 웨브가 주름형이나 제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제출서류)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첨 1의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신청서를 별첨 2에 따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 회장은 효과적인 인증업무를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학회장은 학회 부회장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이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회로 인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의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접수 : 학회 사무국 (인증신청서 접수)
2. 검토 : 학회 운영위원회 (타당성 검토)
3. 계약 및 통보 : 학회 사무국 (계약, 계약금 수금)
4. 인증심사회의 : 인증위원회 (인증심사회의 주관, 보완사항 통보)
5. 결정 통보 : 학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결정통보, 인증용역비 수금)
6. 인증서 교부 : 학회 운영위원회 (인증서 교부)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위원회는 별첨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인증신청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 하고, 서류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평가의 기준)
① 인증위원회는 별첨 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업체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인증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신청업체에 통보한다.
④ 인증심사의 통과는 제1항의 평가 이후 인증위원회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⑤ 인증심사 평가기준은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의 평가등급)
① 평가등급은 1급, 2급의 2종류로 한다.
② 1급은 총100점 중 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한다.

③ 2급은 총10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한다.

제10조(인증위원회의 관장)
①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기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하며, 관련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인증심사 후 각 위원의 지적 및 보완 사항은 별도 심사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1부는 사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신청업체에게 송부한다. 관련내용에 대한 대외비는 제14조에 준한다.

제11조(인증 수수료)
① 인증 수수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하며 사무국에서 작성, 집행한다.
② 인증 수수료의 구성
1. 인증 수수료는 2,500만원으로 한다.
2. 인증심사 실행예산은 인증 수수료의 50%이하로 하며 실행내용은 자료검토비, 인증보고서 작성비, 심사위원 기술료, 보고서 인쇄비, 인증서 인쇄비, 관련자료 송달료 등이며 추가 투입 실행내용이 있을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인증위원회 심사비는 사안에 따라 인증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갱신시의 인증수수료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④ 인증 수수료는 인증업무 신청시 60%를, 인증서 교부시 40%를 납부한다.

제12조(인증서 배부)
학회장은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결과를 보고 받아 신청업체에 소정의 인증서(인증 현판 포함)를 발급한다.

제13조(인증서 유효기간 및 재신청)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증서(인증 현판 포함)를 반환받는 것으로 한다.
③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인증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인증심사 업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 및 기술사항, 심사지적 보완사항은 인증 신청업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명백히 인증 신청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 계약된 인증 수수료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인증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가 접수된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② 이의 신청자는 인증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취소) 이 지침에 의해 우수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에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의 결과를 학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기 발급한 인증서는 반환받는 것으로 한다.
① 해당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인증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③ 인증받은 업체에서 설계, 제작 및 시공한 건축물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지침의 개정) 이 인증관리지침은 학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인증신청서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한국강구조학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 2. 별첨 2의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업체는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관리지침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사)한국강구조학회

[별첨 2] 평가기준 및 구비서류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평가기준(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구비서류
1. 리더십 (5점)		▣경영비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5점) ▣최고경영진의의지, 리더십, 기업문화 (2.5점)	▣ 경영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 기업문화 등에 관한 공적서
2. 공사수행능력 (25점)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 10년이상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 10년미만 (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이 아닌경우 (0점)	▣ 관련 증빙서류
	(1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5년 이상 (1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0년이상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0년미만 (5점)	
3. 인적자원수준 (20점)	(10점)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10점) 단, 특급기술자 2인으로 건축구조기술사에 갈음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자격(등급) 서류 ▣ 해당 인력 자격은 직무분야 - 건축
	(10점)	▣특급기술자 1인당 (7점) ▣고급기술자 1인당 (5점) 단, 해당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함.	
4. 물적자원 수준(30점)		▣변단면용 자동용접기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전용소프트웨어 (10점) ▣공장인증 2등급이상 (10점)	▣ 소프트웨어 보유 증빙 서류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증빙 서류 ▣ 공장인증 증빙서류
5. 건축물의 안전도 (감점 15점)		▣최근3년간 준공후 발생한 건축물손상 건당 (5점) ▣최근3년간 준공후 발생한 인명피해사고 건당 (10점)	
6. 자원 및 환경관리 수준 (10점)		▣제작관련 시설 환경관리 (5점) ▣사무 환경관리 (5점)	▣ 제작관련 시설 환경관리 ▣ 사무환경관리 현황
7. 인사 및 조직관리 (10점)		▣조직 관리체계(인사,총무등) (5점)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5점)	▣ 조직관리체계 (인사, 총무 등) ▣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 증빙

▣등급: 1급 (90 점 이상), 2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인증등급유효기간: 3 년

[별첨 2] 평가기준 및 구비서류

우수 공업화박판강구조업체 인증 평가기준(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구비서류
1. 리더십 (5점)		▣경영비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5점)	▣ 경영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최고경영진의의지, 리더십, 기업문화	(2.5점)	▣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 기업문화 등에 관한 공적서
2. 공사수행능력 (25점)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 10년이상	(10점)	▣ 관련 증빙서류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 10년미만	(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자체제작이 아닌경우	(0점)	
	(1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5년 이상	(15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0년이상	(10점)	
		▣공업화박판강구조물 공사연속수행 10년미만	(5점)	
3. 인적자원수준 (20점)	(10점)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10점)	▣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자격(등급) 서류
	(10점)	▣특급기술자 1인당	(7점)	▣ 해당 인력 자격은 직무분야 - 건축
		▣고급기술자 1인당	(5점)	
		단, 해당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함.		
4. 물적자원 수준(30점)		▣변단면용 자동용접기	(10점)	▣ 소프트웨어 보유 증빙 서류
		▣공업화박판강구조물 전용소프트웨어	(10점)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증빙 서류
		▣공장인증 2등급이상	(10점)	▣ 공장인증 증빙서류
5. 건축물의 안전도 (감점 15점)		▣최근3년간 준공후 발생한 건축물손상	건당 (5점)	
		▣최근3년간 준공후 발생한 인명피해사고	건당 (10점)	
6. 자원 및 환경관리 수준 (10점)		▣제작관련 시설 환경관리	(5점)	▣ 제작관련 시설 환경관리
		▣사무 환경관리	(5점)	▣ 사무환경관리 현황
7. 인사 및 조직관리 (10점)		▣조직 관리체계(인사,총무등)	(5점)	▣ 조직관리체계 (인사, 총무 등)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5점)	▣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 증빙

▣등급: 1급 (90 점 이상), 2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인증등급유효기간: 3 년